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4. 5. 2.(목) 배포 즉시

소규모사업장이 업종별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5.2.(목) 서울경제, “우리도 처벌 대상?”…식당 사장도 스타트업 대표도 여전히 몰라

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’24.1.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, **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**하기 위해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컨설팅, 교육 등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연계하는 **‘산업안전 대진단’을 실시 중**(1.29.~12월)

○ 2~4월 집중추진기간 동안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인지하고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점, 4대보험 고지서, OTT플랫폼 등 **일상 접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 홍보에 주력***하였음

* CU편의점(1,890개 매장),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고지서 활용 안내, OTT플랫폼 광고, 개별 사업장 공문·우편(38만개소) 발송 및 1~3월 신규성립 사업장 팩스·우편 안내(1만개소), 국가전광판(210개소) 송출, 현수막 게시(전국 2.7천개소) 등

○ 3월말까지 25만 5천건의 안전수준 진단이 완료되고 12만개 사업장이 정부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등 **현장의 관심도 높은 상황**

□ 대진단과 함께 중소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정부지원사업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**자치단체 및 경총,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협업하여 공동 설명회·교육도 진행** 중

* **(서울시)** 자치구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정책 설명회(3월~, 총 25회)
(경총)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교육(3월~, 13회) **(대한상의)** 전국 순회 설명회(3월~, 38회)

□ 또한, **’21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사고사례와 특성을 반영**한 20개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,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 **안내 자료를 제작·배포**하였고

○ **기존 가이드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**하여 올해에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**업종별 협단체들과 함께 사고사례와 핵심 내용 위주로 간소화**된 **23개 세부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**를 제작하여 순차적으로 배포하고 있음

* (4.22. 배포) ▲숙박업, ▲음식점업, ▲경비·청소업, ▲벌목업

* (4.29. 배포) ▲사업시설유지관리업, ▲금속주조업, ▲구조용 금속제품제조업, ▲플라스틱 제품 제조업, ▲도금업

* (5월 배포 예정) ▲식료품제조업, ▲육상화물 취급업, ▲인쇄업 등 14개 업종

○ 아울러, 숙박업, 도금업 등 **관심이 높은 업종*을 중심**으로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**소규모사업장 대상 설명회도 5월부터 진행할 예정**임

* 대한숙박업중앙회(위생교육 활용),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고용부에 설명회 요청

□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**소규모사업장의 불안감을 해소**하고 **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**할 수 있도록 **현장 접점을 확대**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음
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지혜 (044-202-89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044-202-89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